소득세

○소득세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세는 통상, 매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급여자동납부 라고도 합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범위, 세율이 다릅니다.
(거주자란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거처를 가지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일반 일본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면제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20.42%가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총액과 지급된 소득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해1월말까지 사업주가 교부합니다.
당해연도 도중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퇴직일 부터 1 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원천징수표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류자격 변경절차 등의 경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조정

매월급여에서 제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년말에 총소득액과 지불한 보험료 등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의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정산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용주가 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및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1) 니시노미야세무서 전화 0798-34-3930

(2) 택스앤서 홈페이지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index.htm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